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상원조 정책 및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협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중 5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은 증원하되, 1명(8등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무상원조 시행기관 사업심사·조정·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과 다자개발협력분야 이행점검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중동연구부를 신설하고, 국제해사기구 내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을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며,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 진출 관련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둔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1개과를 포함한 개발협력국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

조의2에 근거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일반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협력국에 개발전략총괄과·개발의제정책과·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인도지원과를 둔다.

③ 개발전략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개발의제정책과장·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개발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이행 총괄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수립, 이행 점검 및 조정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및 산하 협의체의 운영 총괄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대내외 홍보 업무
 9.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 전략의 수립·조정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개발의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⑥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협력개발협력 분야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업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분석·관리·활용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 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 관련 업무
8.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9.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WFK)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자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기구별 및 사업별 평가에 관한 업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다자차원의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분석·관리·활용
7. 유엔과 그 산하기구·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고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9.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0.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복구계획의 수

립·시행 및 종합·조정

11.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13.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33조제2항 중 “5개”를 “6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명”을 “6명”으로, “3명”을 “4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61”을 “96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7”을 “965”로 하며, 일반직 계 “237”을 “23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를 “2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2”를 “2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1”을 “46”으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12”를 “719”로 하고, 8등급 외무공무원 “67”을 “68”로 하며, 7등급 외무공무원 “20”을 “19”로 하고,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20”을 “24”로 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4”를 “1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68”을 “97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964”를 “972”로 하며, 일반직 계 “238”을 “239”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를 “2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2”를 “2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1”을 “46”으로 하며, 외무공무원 계 “718”을 “725”로 하고, 8등급 외무공무원 “67”을 “68”로 하며, 7등급 외무공무원 “20”을 “19”로 하고,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행정사무관 “20”을 “24”로 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운전주사 “14”를 “17”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개발협력국 개발전략 총괄과	5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협력국에 개발정책과 ·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 · 인도지원과를 둔다.		② 개발협력국에 개발전략총괄과 · 개발의제정책과 ·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 · 인도지원과를 둔다.		
③ 개발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 ·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 · 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③ 개발전략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 ·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개발의제정책과장 · 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 · 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개발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 · 의결에 관한 사항(무상원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이행 총괄		

1의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등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

3.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의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의 회원국개발정책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업무

6.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 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7.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수립, 이행 점검 및 조정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및 산하 협의체의 운영 총괄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 관련 평가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 정책 관련 국내 민간 단체와의 협력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무상원조와 관련된 지역별·국가별 원조 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조정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대내외 홍보 업무

9.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 전략의 수립·조정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의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3.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WFK)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외공관 현지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무상원조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5.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무상원조와 관련된 통계자료

- 련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 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⑥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협력개발협력 분야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자차

의 작성
9. 무상원조사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10.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유엔과 그 산하기구·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삭 제

원의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연간 시행 계획의 이행 점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업무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분석·관리·활용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 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

4.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5.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7.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른 현지 협의체 관련 업무
8.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9.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WFK)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

관과의 협조

⑦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자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기구별 및 사업별 평가에 관한 업무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다자차원의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

분석 · 관리 · 활용

7. 유엔과 그 산하기구 · 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8.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9.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10.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 · 복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11.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조정
13.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생략)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u>5개</u>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③ 연구부장 <u>5명</u>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u>3명</u>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u>괄 · 조정</u>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 · 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u>6개</u>----- -----. ③ ----- <u>6명</u> ----- ----- ----- ----- <u>4명</u>----- ----- -----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61	969	+8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7	965	+8
·	·	·	
·	·	·	
일반직 계	237	238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20	+1
·	·	·	
·	·	·	
행정서기보	22	27	+5
·	·	·	
·	·	·	
사무운영서기보	51	46	-5
·	·	·	
외무공무원 계	712	719	+7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7</u>	<u>68</u>	+1
•	•	•	
7등급 외무공무원	<u>20</u>	<u>19</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 행정사무관	<u>20</u>	<u>24</u>	+4
•	•	•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u>14</u>	<u>17</u>	+3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68	976	+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4	972	+8
일반직 계	238	239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20	+1
행정서기보	22	27	+5
사무운영서기보	51	46	-5
외무공무원 계	718	725	+7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7</u>	<u>68</u>	+1
.	.	.	
7등급 외무공무원	<u>20</u>	<u>19</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 행정사무관	<u>20</u>	<u>24</u>	+4
.	.	.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u>14</u>	<u>17</u>	+3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61	969	+8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57	965	+8
·	·	·	
·	·	·	
일반직 계	237	238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20	+1
·	·	·	
·	·	·	
행정서기보	22	27	+5
·	·	·	
·	·	·	
사무운영서기보	51	46	-5
·	·	·	
외무공무원 계	712	719	+7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7</u>	<u>68</u>	+1
.	.	.	
7등급 외무공무원	<u>20</u>	<u>19</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 행정사무관	<u>20</u>	<u>24</u>	+4
.	.	.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u>14</u>	<u>17</u>	+3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68	976	+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64	972	+8
일반직 계	238	239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9	20	+1
행정서기보	22	27	+5
사무운영서기보	51	46	-5
외무공무원 계	718	725	+7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7</u>	<u>68</u>	+1
.	.	.	
7등급 외무공무원	<u>20</u>	<u>19</u>	-1
.	.	.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서기관 · 행정사무관	<u>20</u>	<u>24</u>	+4
.	.	.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 운전주사	<u>14</u>	<u>17</u>	+3
.	.	.	
.	.	.	

